

군사기밀의 분류기준

군사 I 급비밀	군사 II 급 비밀	군사 III 급 비밀
1. 국가방위 및 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 사항 2. 우리나라 또는 우방국가에 무력 침공이나 전쟁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군사정책 및 군사외교에 관한 비밀조약 또는 협정이나 비밀합의 내용 나. 군사전략 및 전쟁계획의 군사내용 및 집행 사항 다. 비밀무기의 설치 및 사용계획, 전지소요계획, 비밀무기 전략에 관한 사항 라. 핵무기 사용 및 화생방전 에 관한 운용 계획적인 적 능력의 정보관단 3.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군의 편제·장비 및 동원에 관한 중요 사항 4. 군사상 중요한 전략 정보수집 활동 및 완성된 군사정보계획 5. 군사기술발전에 관한 사항	1. 국가방위에 중요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 사항 2. 국제관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군사상의 비밀 활동, 조약 및 회의 등의 부분적인 사항과 국가방위 계획 및 그 효과에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군사 사항 가. 군사 1급 비밀에 속하지 아니한 군사전략 및 훈련 용병에 관한 사항 나. 군사방위 및 군사비밀외교(군사비밀외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각 군부대의 예속계통·부대수·부대의 병원수 또는 부대의 장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라. 정보부대 및 특수작전 부대의 입문·배치 또는 수행동에 관한 사항 마. 부대가 사용하는 군사시설의 위치·구성·설비·성능 또는 강도에 관한 사항 바. 부대가 사용하는 함선, 항공기, 병기, 탄약 기타 군수품의 종류·수량·상태 또는 배치에 관한 사항 사. 군 및 군속의 신분을 가진 간첩의 수색·체포활동에 관한 사항 아. 군사심리전의 계획·방법 또는 그 집행에 관한 사항 3. 군의 편제·장비 또는 동원에 관한 계획의 내용 또는 그 집행 사항 4. 군의 편제 또는 장비의 현상 5. 제조 또는 도입중이거나 보유중인 함선·항공기·병기·탄약 기타 군수품의 성능·제작·보관 및 수리에 관한 기술·사용방법 및 전반적인 수량과 품목에 관한 사항 6. 군점령의 첩보수집 또는 방첩에 관한 계획 또는 그 집행 사항 7.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반적인 군사비밀에 관한 사항 8. 전진지 및 준전진지의 계획의 내용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군용 통신시설 또는 통신규정의 내용에 관한 사항 10. 전반적인 군통신망의 조직·통신소의 호출부호 또는 사용 주파수에 관한 사항 11. 군용 암호에 관한 사항 12. 전반적인 군수공장의 생산 또는 수리 능력에 관한 사항 13. 군수품의 발명·개량에 관한 연구의 내용 또는 그 성과(군의 계약, 위탁 또는 감독에 의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4. 전반적인 향토예비군의 편제·장비 및 동원에 관한 사항	1. 국가외교 사항중 공개됨으로써 적 또는 가상적국에게 유리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군사 사항 가. 공개되기 전의 부분적인 군사외교(군사원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나. 군사II급 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사작전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 군사정책, 군사전략, 군사작전 계획과 이에 따르는 군사용병에 관한 사항 가. 부분적인 각군부대의 예속계통 부대수 부대의 병원수 또는 부대의 장비에 관한 사항 나. 부대의 입문·배치 또는 행동에 관한 사항 다. 부분적인 군사시설의 위치·구성·설비·성능 또는 강도에 관한 사항 라. 부분적인 부대의 함선·항공기·병기·탄약 기타 군수품의 종류·수량·상태 또는 배치에 관한 사항 마. 전술교리에 관한 연구사항 3. 부분적인 편제·장비 및 동원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부분적인 성능·제작·보관 및 수리에 관한 기술·사용방법 및 수량과 품목에 관한 사항 5. 군의 첩보수집활동 또는 방첩활동의 수단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첩보부대 또는 방첩부대의 편제·배치 및 임무에 관한 사항 6. 부분적인 적의 군사비밀에 관한 사항 7. 부분적인 군사수송계획 및 그 집행사항과 군용통신시설 또는 군용통신규정의 내용에 관한 사항 8. 부분적인 군용통신망의 조직·통신소의 호출부호 또는 사용주파수에 관한 사항 9. 군용음어 및 암호호에 관한 사항 10. 군이 생산·수리 또는 시공하는 군수품이나 군사시설 공사의 수량 또는 내용(군의 계약, 위탁 또는 감독에 의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 향토예비군의 편제·장비 및 부분적인 동원에 관한 사항 12. 군의 중요인사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 및 군사경력에 관한 사항 가. 군의 편제상 장관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지휘관 및 참모 나. 정보부대 및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지휘관